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69

발의연월일: 2022. 7. 15.

발 의 자 : 윤재옥 • 권성동 • 김용판

김희곤 • 노용호 • 박성민

성일종 • 양금희 • 윤창현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·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실시 를 위해 다른 법인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 은 상황임.

또한 매년 심각해져가는 저출산·고령화 문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

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사용"을 "사용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 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
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	한 감면) ①
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	
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	
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으	
로 직접 <u>사용</u> 하기 위하여 취득	사용(「영유아보육법」
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	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
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	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같은 법
제한다.	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
	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
	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